제322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6. 9. .

복지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본 안건은 2026년 8월 3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1조에 따라 2026년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로서,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사무를 전문적 운영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함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제19조(재위탁·재계약)에 따라 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시 설 명 :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 소 재 지 : 남양주시 경강로 163번길 44(이패동)

○ 처리용량 : 120톤/일

○ 처리방법 : 기계적 처리(파쇄·선별·탈수)

○ 운영인원 : 12명

○ 민간위탁 기간 : 2027. 1. 1. ~ 2030. 12. 31.(4년간)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총사업비 : <u>금6,511,766천원/년</u>

- 산출근거 : 원가조사용역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산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원가조사 용역을 실시

○ 적정성 검토 결과

구 분	검 토 의 견
다른 사무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 필요 ○ 직영 운영은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기술 축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민간위탁은 기 확보된 전문인력과 운영기술을 즉시 활용할 수 있어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함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는 시민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공공성이 높은 사무로서,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인 운영역량을 활용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공공성과 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경제적 효율성	○ 전문 인력과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업체를 활용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 기반 운영과 전문적인 유지·보수 및 인력 관리를 통해 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오랜 기간 축적된 운영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시설의 안정적·효율적 운영·관리가 가능함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성과평가)에 따른 성과평가 대상으로 시설 가동률, 처리실적, 법정검사 이행 여부,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실적 등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운영성과의 평가·관리가 가능함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지도·감독)에 따른 지도·점검, 성과평가 및 예산집행 점검 등을 실시함으로써 수탁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가능함
민간의 서비스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분야에는 관련 경험과

구 분	검 토 의 견
공급 시장 여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가 다수 존재하여 공개경쟁을 통한 적정 수탁기관 선정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종 합 의 견	○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사무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공공서비스로서, 전문성과 효율성이 함께 요구되는 분야임 ○ 민간의 전문 기술과 운영 경험을 활용하고, 시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한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와 함께 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 발생량 및 처리량 현황

(단위: 톤)

구 분	음식물 발생량			음식물 처리량				
	총 계	용기분	봉투분	총 계	음폐수	탈수케익	협잡물	음폐유
2021년	**43,875**	33,210	10,665	**45,451**	25,057	19,537	533	324
2022년	**42,089**	31,699	10,390	**42,600**	22,279	19,447	542	332
2023년	**39,421**	27,642	11,779	**39,869**	20,215	18,787	532	335
2024년	**39,287**	28,114	11,173	**40,159**	20,672	18,592	563	332
2025년	**39,534**	28,803	10,731	**40,088**	20,299	18,887	570	332

※ 남양주시 전역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별내동 및 진접택지지구 제외)

■ 위탁사무

○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반입·반출되는 폐기물의 계량 확인 및 관리
-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
- 보유 장비 유지 및 관리
-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관리
- 기기의 정기적인 점검 및 검사, 분석
- 시설 운영 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 준수
- 기타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탁자가 수행을 지시하는 사항 내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해당 사무를 2027년부터 4년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에서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은 하루 12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로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가동과 전문적인 유지・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관련 전문인력과 운영기술을 갖춘 민간업체를 활용하는 것은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관련법률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유지관리와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기술력을 갖춘 전문업체가 선정될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것임.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면,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19조 (재위탁 · 재계약)<개정 2024.2.15.>**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 재계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2.15., 2024.10.2.>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24.2.15.><개정 2024.10.2.>

③ 시장은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이전과 동일한 수탁기관을 연속하여 선정하고자 할 경우, 제4항을 준용한다.<신설 2024.2.15.>

④ 시장은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성과평가와 제17조의 지도·감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2.15.>

⑤ 시장은 재위탁 · 재계약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24.2.15.>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① 시장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3.27.>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 및 시 이외의 지역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2. 6. 1., 2025. 10. 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0. 7. 23., 2015. 1. 20., 2025. 10. 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기후에너지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 7. 23., 2025. 10. 1.>